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4.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13호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종전 500m에서 1km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검토의견 >

-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안 제12조에 전통산업보존 구역의 범위가 종전에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었으나 1킬로미터 이내로 구역을 확대하고, 같은 조에 “다만, 인접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마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마포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어,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